

#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

의안번호
99-67

제안연월일 : 1999. 11.

제안자 : 거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### ○ 매각코자 하는 재산

- 농경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1필지 374m<sup>2</sup>
- 예정가격이 1건당 1,000만원이하의 재산을 매각 1필지 7,469m<sup>2</sup>
- 경영치수사업시행으로 발생된 재산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3필지22,391m<sup>2</sup>

## 2. 재산의 표시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구분	재산 종별	재 산 소 재 지	지목	수 량	예정금액	비 고
	소계	5필지		30,234	1,681,904	
매각	토지	거창읍 송정리 997-2	답	374	1,668	수의계약
	“	고제면 봉계리 산10	임야	7,469	911	“
	“	가조면 일부리1237-38	하천	18,392	1,379,400	공개경쟁입찰
	“	가조면 일부리 681	답	130	9,750	“
	“	가조면 석강리 1378-53	하천	3,869	290,175	“

※ 위 예정금액은 감정 후 변동될 수 있음.

## 3. 근거 및 참고자료

-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제1항 : 공유재산 관리계획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36조: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신청
- 지방재정법시행령95조 :농경지를 대부분은 실경작자에게 매각 (수의계약)  
예정가격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매각(수의  
계약)
-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: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신청서